



# 『iM청년도약계좌』 요약 상품설명서

## ■ 기본 정보

최고금리	연6.00%	‘25.07.10현재[5년제 기준,3년(고정금리)&2년(변동금리)적용] 최고 우대이자율 연2.00%p 적용 시 (자세한 우대금리 요건은 상품설명서 확인 필요)
가입기간	5년	
가입계좌수	1인 1계좌(전 금융기관)	
판매기간	특정 지정 기간(요건 충족자에 한함)	
납입한도	매회 1천원 이상 월 최대 70만원 이내(천원단위) 단, 연간 납입한도는 8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일시납대상자는 아래의 상품설명서 확인	
세제혜택	가능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 가능
예금담보대출	가능	납입액의 95%까지 가능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유의 사항

중도해지이율	기본이자율 × 10% ~ 기본이자율 × 80%
이자계산방식	<p>입금 건별로 해당기간 약정이자율 지급</p> <p>(1회차)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일수/365</p> <p>(2회차)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일수/365</p> <p>⋮</p> <p>(마지막회차)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일수/365</p> <p style="text-align: right;">만기일</p>
예금만기	<p>자동해지 신청 시 → 지정계좌 입금</p> <p>※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만기일 직전 영업일에 해지 시 ‘중도해지’로 처리됨. → 정부기여금 전액 지급 불가(60% 지급), 중도해지이자율로 적용 등</p>

※ 본 요약 상품설명서는 『iM청년도약계좌』의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반드시 자세한 상품설명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M청년도약계좌』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 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iM청년도약계좌
- 상품특징 : 청년 고객 대상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적립식 상품

## 2 거래 조건

구분	내용
가입대상	<p>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국민인 개인(외국인 및 재외국민 제외)</p> <p>① 나이 : 상품 가입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사람                      ※ 병적증명서 등으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함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p> <p>② 개인소득 : 상품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 기준<sup>주1)</sup>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주1)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다. 위 '가', '나'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사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가 있는 사람은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을 것</p> <p>③ 가구소득 : 상품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u>가구소득 기준</u><sup>주2)</sup>을 충족하는 사람</p>

## 2 거래 조건 (계속)

구분	내용																
가입대상 (계속)	<p>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함)의 250% 이하일 것</p> <p>나. 가구원<sup>주3)</sup>은 이 예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 (단,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하며, 청년이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조부모를 포함)</p> <p>다.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 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연금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 (단, 미성년자인 형제·자매의 경우 소득합산에서 제외)</p> <p>※ 주2)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p> <p>※ 주3) 주민등록표 등본 상 가구원을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가구원을 확정</p> <p>④ 금융소득종합과세 미대상자 : 상품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sup>주4)</sup>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함)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p> <p>※ 주4)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 중지, 과세 전환, 정부기여금 미지급, 이자계산 중단, 특별중도해지 불가 처리됨</p> <p>• 가입 신청 후 가입대상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에 한해 특정 지정 기간에 가입 가능</p>																
가입금액	<p>• 가입금액 : 최소 1천원 이상 최대 70만원 이하(천원단위)</p> <p>• 추가 입금액 : 매회 1천원 이상 월 최대 70만원 이내(가입금액 포함/월 단위) 단, 연간<sup>주5)</sup> 납입한도는 8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연간납입한도는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함)</p> <p>※ 주5) (예시) '23.7.10일 가입 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00a651; color: white;"> <th>구분</th> <th>기간</th> <th>구분</th> <th>기간</th> </tr> </thead> <tbody> <tr> <td>1년차</td> <td>'23.7.10 ~ '24.7.9</td> <td>4년차</td> <td>'26.7.10 ~ '27.7.9</td> </tr> <tr> <td>2년차</td> <td>'24.7.10 ~ '25.7.9</td> <td>5년차</td> <td>'27.7.10 ~ '28.7.9</td> </tr> <tr> <td>3년차</td> <td>'25.7.10 ~ '26.7.9</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위의 한도에도 불구하고,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한 사람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지급금을 최초납입금액으로 일시납입<sup>주6)</sup>할 수 있음 단, 가입 후 2개년<sup>주7)</sup> 동안 납입한도는 1,6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p> <p>※ 주6) 최소 200만원 이상이어야 함(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원금+이자+저축장려금) 이내)</p> <p>※ 주7) (예시) '24.2.22일 가입 시 2개년('24.2.22~'26.2.21)</p> <p>※ 일시납입 관련 내용은 아래 '5. 일시납입' 부분 참조</p>	구분	기간	구분	기간	1년차	'23.7.10 ~ '24.7.9	4년차	'26.7.10 ~ '27.7.9	2년차	'24.7.10 ~ '25.7.9	5년차	'27.7.10 ~ '28.7.9	3년차	'25.7.10 ~ '26.7.9	-	-
구분	기간	구분	기간														
1년차	'23.7.10 ~ '24.7.9	4년차	'26.7.10 ~ '27.7.9														
2년차	'24.7.10 ~ '25.7.9	5년차	'27.7.10 ~ '28.7.9														
3년차	'25.7.10 ~ '26.7.9	-	-														

## 2 거래 조건 (계속)

구분	내용																		
가입제한	• 공동명의 불가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 가입 불가(전 금융기관)																		
상품유형	• 정기적금(자유적립식)																		
자동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이체 지정일 : 1일 ~ 25일 (출금계좌가 당행 계좌인 경우에 한함)</li> <li>• 이체일이 휴일<sup>*)</sup>인 경우 익영업일에 처리됩니다.</li> </ul> *) 휴일 :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계약기간	• 5년																		
가입계좌수	• 1인 1계좌(전 금융기관)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좌에 <b>압류, 가압류, 질권설정</b>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 금지채권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li> <li>• <b>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b>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li> </ul>																		
기본이자율 (단리, 세금납부전) 25.07.10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신규가입일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적용</b></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계약기간</th> <th>적용기간</th> <th>연 이자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5년</td> <td>가입일 ~ 3년</td> <td>연4.00%</td> </tr> <tr> <td>3년 초과 ~ 만기일</td> <td>변동금리 적용</td> </tr> </tbody> </table> <p>※ 3년 초과 기간부터 기본이자율은 변동 될 수 있으며, 변경될 때 마다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이율로 기간을 구분하여 적용</p>			계약기간	적용기간	연 이자율	5년	가입일 ~ 3년	연4.00%	3년 초과 ~ 만기일	변동금리 적용								
	계약기간	적용기간	연 이자율																
5년	가입일 ~ 3년	연4.00%																	
	3년 초과 ~ 만기일	변동금리 적용																	
우대이자율 (단리, 세금납부전) 최고 연2.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신규가입일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조건별 우대이자율 적용</b></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우대이자율 결정일</th> <th>우대요건</th> <th>우대 이자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가입일</td> <td>상품 가입 전 마케팅 활용[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동의] 상품서비스 안내수단 전체 동의한 경우</td> <td>연0.30%p</td> </tr> <tr> <td>상품 가입 전 당행에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고객</td> <td>연0.50%p</td> </tr> <tr> <td rowspan="2">만기일</td> <td>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확인한 개인소득금액이 소득요건<sup>주8)</sup>을 충족한 횟수 - 1회당 연0.10%p</td> <td>최대 연0.50%p</td> </tr> <tr> <td>이 예금 가입기간<sup>주9)</sup> 중 당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30회 이상 입금한 경우<sup>*</sup></td> <td>연0.70%p</td> </tr> <tr> <td colspan="2">합 계</td> <td>연2.00%p</td> </tr> </tbody> </table> <p>※ 주8)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예시] 2023년 1월~6월 가입 신청 시 :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5회 충족 여부 확인 (2021~2025년 소득) 2023년 7월~12월 가입 신청 시 :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5회 충족 여부 확인 (2022~2026년 소득) ※ 주9) 예금가입기간 : 예금가입일 당일 ~ 예금만기일 전일 *)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를 일시납으로 신규한 고객의 경우, 선택한 일시납 기간(개월 수)을 자동이체 납입 횟수로 인정함</p> <p>※ <b>모든 우대이자율은 만기 해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b></p>			우대이자율 결정일	우대요건	우대 이자율	가입일	상품 가입 전 마케팅 활용[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동의] 상품서비스 안내수단 전체 동의한 경우	연0.30%p	상품 가입 전 당행에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고객	연0.50%p	만기일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확인한 개인소득금액이 소득요건 <sup>주8)</sup> 을 충족한 횟수 - 1회당 연0.10%p	최대 연0.50%p	이 예금 가입기간 <sup>주9)</sup> 중 당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30회 이상 입금한 경우 <sup>*</sup>	연0.70%p	합 계		연2.00%p
	우대이자율 결정일	우대요건	우대 이자율																
	가입일	상품 가입 전 마케팅 활용[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동의] 상품서비스 안내수단 전체 동의한 경우	연0.30%p																
		상품 가입 전 당행에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고객	연0.50%p																
	만기일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확인한 개인소득금액이 소득요건 <sup>주8)</sup> 을 충족한 횟수 - 1회당 연0.10%p	최대 연0.50%p																
이 예금 가입기간 <sup>주9)</sup> 중 당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30회 이상 입금한 경우 <sup>*</sup>		연0.70%p																	
합 계		연2.00%p																	

## 2 거래 조건 (계속)



구분	내용													
만기후이자율 (단리, 세금납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가입일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00a651; color: white;"> <th>경과기간</th> <th>이자율</th> </tr> </thead> <tbody> <tr> <td>만기후 1개월 미만 경과</td> <td>약정이자율 x 50%</td> </tr> <tr> <td>만기후 3개월 미만 경과</td> <td>약정이자율 x 25%</td> </tr> <tr> <td>만기후 3개월 이상 경과</td> <td>약정이자율 x 10%</td> </tr> </tbody> </table>	경과기간	이자율	만기후 1개월 미만 경과	약정이자율 x 50%	만기후 3개월 미만 경과	약정이자율 x 25%	만기후 3개월 이상 경과	약정이자율 x 10%					
	경과기간	이자율												
만기후 1개월 미만 경과	약정이자율 x 50%													
만기후 3개월 미만 경과	약정이자율 x 25%													
만기후 3개월 이상 경과	약정이자율 x 10%													
<p>※ 약정이자율은 만기시 확정된 이자율입니다.</p>														
만기이자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li> <li>입금건별 이자계산 산식 :  <math display="block">\text{입금금액} \times \text{약정이율} \times \text{일수(입금일~만기일 전일)} / 365</math> </li> </ul>													
중도해지이자율 (단리, 세금납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가입일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자율 적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00a651; color: white;"> <th colspan="2">예치기간</th> <th>이자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신규일로부터 3년 미만 경과한 계좌</td> <td>입금일로부터 20% 미만 경과된 월부금</td> <td>기본이자율 x 10%</td> </tr> <tr> <td>입금일로부터 20%~40%미만 경과된 월부금</td> <td>기본이자율 x 20%</td> </tr> <tr> <td>입금일로부터 40%~60%미만 경과된 월부금</td> <td>기본이자율 x 40%</td> </tr> <tr> <td colspan="2">신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계좌</td> <td>기본이자율</td> </tr> </tbody> </table>	예치기간		이자율	신규일로부터 3년 미만 경과한 계좌	입금일로부터 20% 미만 경과된 월부금	기본이자율 x 10%	입금일로부터 20%~40%미만 경과된 월부금	기본이자율 x 20%	입금일로부터 40%~60%미만 경과된 월부금	기본이자율 x 40%	신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계좌		기본이자율
	예치기간		이자율											
신규일로부터 3년 미만 경과한 계좌	입금일로부터 20% 미만 경과된 월부금	기본이자율 x 10%												
	입금일로부터 20%~40%미만 경과된 월부금	기본이자율 x 20%												
	입금일로부터 40%~60%미만 경과된 월부금	기본이자율 x 40%												
신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계좌		기본이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기일 대비 경과기간비율에 따른 기본이자율 비율 적용함</li> <li>※ 기본이자율은 가입일 당시 해당 계좌에 적용된 기본이자율임</li> <li>※ 기본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시점부터 변경된 기본이자율 적용함</li> </ul>														
중도해지이자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일로부터 3년 미만 경과한 계좌의 경우,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li> </ul>													
	<p>※ 위 그림은 적용율, 중도해지개월수, 계약월수 등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이 아닙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계좌의 경우,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본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기본이자율이 변경될 경우, 변경시점부터 변경된 기본이자율 적용)</li> </ul>														

## 2 거래 조건 (계속)



구 분	내 용	
특별중도해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래 사유 발생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특별해지사 유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li> <li>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li> <li>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li> <li>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li> <li>바. 가입자의 주택 취득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li> <li>사. 가입자의 혼인 또는 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li> </ul> </li> </ol> </li> <li>특별중도해지시, 신규가입일 당시 해당 계좌에 적용된 기본이자율로 계산 (기본이자율이 변경될 경우, 변경시점부터 변경된 기본이자율 적용)</li> </ul>
부분인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입일 기준 2년 경과 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1회에 한해 부분인출 시점 기준 전전월까지 적립 금액의 40% 이내에서 매월 납입한 금액 단위로 일부 인출 가능</li> <li>부분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인출하는 때에 해당 부분인출분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고, 그 이자율은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함</li> <li>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부분인출이 불가함</li> <li>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에 부분인출 하는 때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음</li> <li>부분인출하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단,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에 부분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인출분에 대한 정부기여금의 60%를 이 예금을 전액 해지하는 때에 지급</li> </ul>
세제혜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 가능</b></li> <li>「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2에 따른 과세특례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됨</li> <li>비과세 혜택은 특별중도해지하는 경우와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며, 예금 신규일부부터 만기(해지)일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li> <li>※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li> <li>※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비과세 적용됨</li> <li>※ <b>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b></li> </ul> </li> </ul>

### 3 정부기여금



구분	내용																																																																
정부기여금이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M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기여금</li> </ul>																																																																
지급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예금의 가입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되는 정부기여금 비율만큼 지급 [정부기여금 100% 지급]</li> <li>1.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 해지한 가입자</li> <li>2. 이 예금의 계약기간 중 특별중도해지한 가입자 [정부기여금 60% 지급]</li> <li>3.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후에 중도해지한 가입자</li> </ul>																																																																
지급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기여금 적립 기준(본인 적립액에 비례하여 소득 구간별 지급 비율로 적립) ※ 단, 정부기여금(II)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금액부터 적용함</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00a651; color: white;"> <th rowspan="2">소득 구간</th> <th colspan="2">개인소득</th> <th rowspan="2">정부기여금(I) 산정 기준금액</th> <th rowspan="2">정부기여금(I) 지급비율</th> </tr> <tr style="background-color: #00a651; color: white;"> <th>총급여 기준</th> <th>종합소득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①<sup>주10)</sup></td> <td>2,400만원 이하</td> <td>1,600만원 이하</td> <td>· 월 적금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적은금액</td> <td>· 정부기여금(I) 산정 기준금액의 6.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②</td> <td>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td> <td>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td> <td>· 월 적금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적은금액</td> <td>· 정부기여금(I) 산정 기준금액의 4.6%</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③</td> <td>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td> <td>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td> <td>· 월 적금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적은금액</td> <td>· 정부기여금(I) 산정 기준금액의 3.7%</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④</td> <td>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td> <td>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td> <td>· 월 적금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적은금액</td> <td>· 정부기여금(I) 산정 기준금액의 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⑤</td> <td>6,000만원 초과</td> <td>4,800만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미지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미지급</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00a651; color: white;"> <th rowspan="2">소득 구간</th> <th colspan="2">개인소득</th> <th rowspan="2">정부기여금(II) 산정 기준금액</th> <th rowspan="2">정부기여금(II) 지급비율</th> </tr> <tr style="background-color: #00a651; color: white;"> <th>총급여 기준</th> <th>종합소득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①<sup>주10)</sup></td> <td>2,400만원 이하</td> <td>1,600만원 이하</td> <td>· 월 적금 납입원금 중 40만원 초과금액</td> <td>· 정부기여금(II) 산정 기준금액의 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②</td> <td>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td> <td>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td> <td>· 월 적금 납입원금 중 50만원 초과금액</td> <td>· 정부기여금(II) 산정 기준금액의 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③</td> <td>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td> <td>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td> <td>· 월 적금 납입원금 중 60만원 초과금액</td> <td>· 정부기여금(II) 산정 기준금액의 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④</td> <td>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td> <td>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미지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미지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⑤</td> <td>6,000만원 초과</td> <td>4,800만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미지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미지급</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10)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사람,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가 있는 사람은 소득구간① 적용</li> <li>※ 국세청 신고소득이 ‘소득없음’으로 확인된 연차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소득우대금리 충족횟수에서도 제외됨</li> </ul>	소득 구간	개인소득		정부기여금(I) 산정 기준금액	정부기여금(I) 지급비율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① <sup>주10)</sup>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I) 산정 기준금액의 6.0%	②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I) 산정 기준금액의 4.6%	③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I) 산정 기준금액의 3.7%	④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I) 산정 기준금액의 3.0%	⑤	6,000만원 초과	4,800만원 초과	미지급	미지급	소득 구간	개인소득		정부기여금(II) 산정 기준금액	정부기여금(II) 지급비율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① <sup>주10)</sup>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 중 40만원 초과금액	· 정부기여금(II) 산정 기준금액의 3.0%	②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 중 50만원 초과금액	· 정부기여금(II) 산정 기준금액의 3.0%	③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 중 60만원 초과금액	· 정부기여금(II) 산정 기준금액의 3.0%	④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미지급	미지급	⑤	6,000만원 초과	4,800만원 초과	미지급	미지급
소득 구간	개인소득		정부기여금(I) 산정 기준금액	정부기여금(I) 지급비율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① <sup>주10)</sup>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I) 산정 기준금액의 6.0%																																																													
②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I) 산정 기준금액의 4.6%																																																													
③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I) 산정 기준금액의 3.7%																																																													
④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I) 산정 기준금액의 3.0%																																																													
⑤	6,000만원 초과	4,800만원 초과	미지급	미지급																																																													
소득 구간	개인소득		정부기여금(II) 산정 기준금액	정부기여금(II) 지급비율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① <sup>주10)</sup>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 중 40만원 초과금액	· 정부기여금(II) 산정 기준금액의 3.0%																																																													
②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 중 50만원 초과금액	· 정부기여금(II) 산정 기준금액의 3.0%																																																													
③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 중 60만원 초과금액	· 정부기여금(II) 산정 기준금액의 3.0%																																																													
④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미지급	미지급																																																													
⑤	6,000만원 초과	4,800만원 초과	미지급	미지급																																																													



### 3 정부기여금(계속)


구 분	내 용									
지급금액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기여금은 신청 시점 또는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심사결과(총 5 회)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익월 초부터 적용<sup>주11)</sup>됨 단, 신청 시점에 실시한 개인소득 심사결과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가입일부터 익년도 가입일이 속한 달까지 적용<sup>주11)</sup>됨            ※ 주11) (예시) '23.7.10 상품 가입 시 정부기여금 적용 기간</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00a651; color: white;"> <th>1년차</th> <th>2년차</th> <th>3년차</th> <th>4년차</th> <th>5년차</th> </tr> </thead> <tbody> <tr> <td>'23.7.10~'24.7.31</td> <td>'24.8.1~'25.7.31</td> <td>'25.8.1~'26.7.31</td> <td>'26.8.1~'27.7.31</td> <td>'27.8.1~'28.7.9</td> </tr> </tbody> </table>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23.7.10~'24.7.31	'24.8.1~'25.7.31	'25.8.1~'26.7.31	'26.8.1~'27.7.31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23.7.10~'24.7.31	'24.8.1~'25.7.31	'25.8.1~'26.7.31	'26.8.1~'27.7.31	'27.8.1~'28.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소득 심사는 가입일 또는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심사일 현재 개인소득 기준을 준용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결정함</li> <li>•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일시납입한 금액의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일시납입한 달에 적용되는 지급비율 적용함</li> </ul>									
알아두실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기여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li> <li>2 정부기여금 지급 시 신규가입일 당시 해당 계좌에 적용된 기본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정부기여금에 더하여 지급함(기본이자율이 변경될 경우, 변경시점부터 변경된 기본이자율 적용)            단, 이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정부기여금에 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부터 만기일 (특별중도해지 및 3년 경과 해지의 경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산한 이자를 적용</li> <li>3.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li> <li>4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정부정책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li> <li>5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li> </ol>									

### 4 기타사항

구 분	내 용
거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 모바일앱뱅킹            ※ 가입 신청 및 가입은 영업일 09:00~18:30에만 가능</li> <li>• 해지 : 영업점, 모바일앱뱅킹</li> </ul>
계약해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 가능</li> <li>•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li> <li>•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로 처리하며, 가입 경과일에 따른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할 수 있음</li> <li>• 계약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만기일 직전 영업일에 해지 시 '중도해지'로 처리            → 정부기여금 전액 지급이 불가(60% 지급),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등</li> </ul> <p><small>*) 휴일 :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small></p>

#### 4 기타사항 (계속)



구분	내용		
재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후 재가입 가능하나, 해지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2개월 후부터 재신청 가능</li> <li>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후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계약기간에서 기가입기간만큼 차감한 비율<sup>주12)</sup>을 적용하여 산출(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li> <li>※ 주12) “(계약기간 - 재가입 전 가입기간) / 계약기간”, 가입기간이라 함은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한 기간(올림하여 환산)을 의미하며, 2회 이상 재가입할 경우 각각 가입기간을 계산하여 합산</li> </ul>		
담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보제공은 계좌 잔액의 95% 까지 가능</li> </ul>		
재예치	불가	양도 및 명의변경	불가
질권 설정	가능	만기앞당김지급	불가
예금자보호여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li> <li>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a href="http://www.sleepmoney.or.kr">www.sleepmoney.or.kr</a>)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li> </ul>		
자료열람요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li> <li>-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 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li> <li>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li> </ul>		
위법계약해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li> <li>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li> </ul>		
연계·제휴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사항 없음</li> </ul>		

## 5 일시납입



구분	내용										
일시납입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 중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신청(가입 신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도 가능) 완료 후 적격 대상으로 통보 받은 자(200만원 이상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원금+이자+저축장려금) 이내에서 일시납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납입하기 위해서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신청해야 함</li> <li>※ 청년도약계좌는 해지 2개월 후부터 재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일시납입 신청 및 계좌개설 후 중도해지 시에는 일시납입으로 재신청이 어려움</li> <li>※ iM뱅크 앱에서 가입 신청 후 청년도약계좌 웹사이트(ylaccount.kinfa.or.kr)를 통해 일시납입 정보를 등록해야 일시납입 가입신청이 완료됨</li> <li>※ 일시납 적격대상자인 경우, 등록된 일시납 정보로 무조건 가입해야함(가입시점에 선택한 일시납 금액 납입 필요, 일시납 금액·기간 등 변경 불가)</li> </ul> </li> </ul>										
알아두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납입한 일시납입금액만큼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되는 구조로 <b>일시납입으로 선납한 기간 동안 추가납입할 수 없음(자동이체는 일시납 종료 익월부터 가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 (예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gt;</li> <li>※ (가정) 매월 50만원, 13개월, 총 650만원 일시납입</li> </ul> <table border="1" data-bbox="375 958 1489 1093"> <thead> <tr> <th>가입일</th> <th>1년차</th> <th>2년차</th> <th>일시납입 기간*</th> <th>정상납입</th> </tr> </thead> <tbody> <tr> <td>'24.2.22</td> <td>'24.2.22~ '25.2.21</td> <td>'25.2.22~ '26.2.21</td> <td>'24.2.22~ '25.3.21</td> <td>'25.3.22~3.31일 동안 월 70만원 이내 납입가능</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이체는 25년 4월부터 신청 가능('25.3.22~3.31 중에는 본인이 직접 납입해야 함)</li> <li>* 일시납입 기간이 종료된 '25.3.22일부터 월 70만원, 연 840만원 한도로 운영</li> <li>* 만 13개월(일시납입 기간)동안 입금 전면 불가</li> </ul> </li> <li>• 일시납입한 사람이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아니거나, 일시납입한 금액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납입 중지, 과세 전환, 정부기여금 미지급, 이자계산 중단, 특별중도해지 불가 처리됨</li> <li>• 일시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가입 시 적용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일시납입 기간 종료 전에 특별중도해지할 경우 가입유지기간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만 지급함</li> </ul>	가입일	1년차	2년차	일시납입 기간*	정상납입	'24.2.22	'24.2.22~ '25.2.21	'25.2.22~ '26.2.21	'24.2.22~ '25.3.21	'25.3.22~3.31일 동안 월 70만원 이내 납입가능
가입일	1년차	2년차	일시납입 기간*	정상납입							
'24.2.22	'24.2.22~ '25.2.21	'25.2.22~ '26.2.21	'24.2.22~ '25.3.21	'25.3.22~3.31일 동안 월 70만원 이내 납입가능							

## 5 유의 사항

- 이 예금의 개인 및 가구원 소득 요건 확인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며, 약 3주 정도 소요 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아이엠뱅크’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법 등의 개정에 따라 상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품 특약에 동의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하고,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정부기여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 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
- 이 예금은 아이엠뱅크 수신기획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66-5050, 1588-505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imbank.co.kr](http://www.imbank.co.kr))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며, 중도해지이자율과 만기후이자율은 경과기간별 차등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우대이자율은 만기 해지시에 지급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부록] 예금 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총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li> </ul>
가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li> </ul>
질권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li> </ul>
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li> <li>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li> </ul>
경과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li> </ul>